

## 2001년부터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

### ♣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?

☞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(누진세율)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- 이 경우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.

### ♣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☞ 금융소득을 기존의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계층 간·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,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.

### ♣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나요?

☞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,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을 20%에서 15%로 낮추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,

-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20%~40%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 되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.

### ♣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?

☞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. 1.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(이자·

배당소득)부터 시행합니다.

그러므로 2000. 12. 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- 2000. 12. 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. 1. 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
**종합과세**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200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. 5.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.

### ♣ 금융소득은 어떠한 방법으로 종합과세가 되나요?

☞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5%세율로 원천징수 한후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부중 자산소득(이자·배당·부동산소득) 이외의 다른 소득(사업·근로소득 등)이 많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### 【사례1】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의 과세방법

► 금융소득 1억원중 4천만원은 15%로 분리과세되며,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 종합과세됨.

### 【사례2】

	근로소득	사업소득	자산소득
남편	1억5천만원	3천만원	
배우자	3천만원		2천만원

►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남편이 주된 소득자이므로 남편의 사업소득 1억5천만원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합산 금융소득 1천만원과 자산소득인 배우자의 부동산소득 5천만원을 합한 2억 1천만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금융소득 4천만원은 분리과세됨.

\*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 과세 합니다.

### ♣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. 12. 31 이전기간과 2001. 1. 1 이후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까?

☞ 2000. 12. 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. 12. 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. 1. 1 이후 기간이자를 2001. 1. 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. 1. 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
-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. 1. 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

### ♣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종합과세가 되나요?

☞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또한, 비과세 및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중 4,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가 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4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%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.

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	당연 종합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영업대금의 이자(사체이자)</li> <li>•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</li> <li>•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</li> <li>•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·배당소득</li> </ul>
	조건부 종합과세	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으로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	비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연금저축·신탁의 이자</li> <li>•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(7년 이상)</li> <li>•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</li> <li>• 장기저축성보험차익(7년 이상)</li> <li>• 노인·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</li> <li>• 주식양도차익·채권매매차익, 공인신탁의 이익</li> </ul>
	분리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년 이상 장기저축·채권이자(신청한 경우)</li> <li>• 비상명금융소득(원천징수세율 90%)</li> <li>• 장장공제회 초과반환금</li> <li>• 세금우대 종합저축이자</li> </ul>

\* 5년 이상의 장기저축 및 장기채권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까지 반드시 금융기관에 분리과세신청을 하여야만 30%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.(선택 적용)

### ♣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?

☞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실제 소유자가 부모이고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합산과세 됩니다.